

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4의(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)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(안) 재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를 공고합니다.

2025. 5. 8.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**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(안)
재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**

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, 박상원 사무관(044-203-4345) / sangwon08@korea.kr

□ 재행정예고기간 : 25.04.09. ~ 25.04.29.

□ 주요 제출의견 검토 결과

연번	행정예고 내용 및 해당 조문	제출의견 내용	검토 결과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소형·중형사업에 ‘절대평가’ 도입(단, 비파괴검사 분야를 제외한 대형사업은 상대평가)- (나. 업체능력 및 신용도 - 1)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상대평가 유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술력 하향 평준화, 평가의 변별력 저하, 사업 품질 저하, 공공안전 저해 우려- 비파괴 검사 분야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	<p><미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정경쟁 원칙, 공정위 규제개선 권고, 연구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- 또한, 절대평가 방식 하에서도 발주청이 평가 기준 및 기술요구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변별력 확보와 품질 저하 방지가 가능○ 비파괴검사 분야는 기술기준과 절차 등이 이미 표준화된 분야로, 절대평가 도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로 판단- 또한, 한국가스공사, 지역난방공사, 발전5사(일부)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

연 번	행정예고 내용 및 해당 조문	제 출 의 건 내 용	검 토 결 과
			<p>해당 분야에 대해 이미 절대평가를 적용해 온 선례가 다수 존재하며, 현장 안정성도 검증</p> <p>- 아울러, 비파괴검사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지속적인 절대평가 도입 요청이 있어, 이를 반영해 우선 적용 분야로 선정</p>
		<p>○ 절대평가 전면 도입</p> <p>- 공정위 권고 및 연구용역 결과 반영</p> <p>- 상위 업체 독과점 구조 타파 등</p>	<p><미반영></p> <p>○ 기준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,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 도입을 결정</p> <p>- 향후 추가 연구용역 및 제도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까지 절대평가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</p>
		<p>○ ‘복잡, 특수한 사업’은 ‘상대평가’를 적용</p> <p>- 발주청의 고품질 서비스 구매 기회가 제한</p> <p>-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시장 진입함</p>	<p><미반영></p> <p>○ 사업이 단순한지 또는 복잡·특수한지는 사업별로 다르며, 이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·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</p> <p>- 따라서, 해당 사업의 복잡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</p>
		<p>○ 절대평가 산식 표 구분 항목에서 ‘순위’는 ‘등급’으로 변경</p> <p>- 절대평가에 ‘순위’ 단어 사용은 부적합</p>	<p><반영></p> <p>○ ‘순위’는 평가 대상간 ‘서열’의 의미도 포함하므로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반영</p>

연 번	행정예고 내용 및 해당 조문	제 출 의 건 내 용	검 토 결 과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대평가 예시는 ‘소형사업’이 아닌 ‘대형사업’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제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대형사업 기준으로 예시 필요 	<p><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대평가는 대형사업에 한해 적용되므로 고시 개정안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반영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 시 특급기술자 이상 만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. 참여기술자 능력 - 1) 경력 - 나) 전문화 정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사 만점(현행 유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사 활용 저하 및 고급 인력 양성 축소, 변별력 약화 등의 우려 의견 제시 	<p><미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사 수급 부족, 실무급에 기술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특급기술자에 대해서도 기술사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사 만점을 유지함으로써 기술사 활용 및 우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- 참고로, 타 고시(PQ 기준 등)에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도 ‘고급’ 이상에 만점을 부여하고, 일반참여기술자는 ‘중급’ 이상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, 동 고시보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는 동일한 등급별 계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은 기술사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- 기술사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 문제 등 	<p><미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시점에서는 실무급 기술자 평가체계의 개선이 우선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번 개정은 참여기술자 등급별 계수 조정에 한정하여 추진하고,

연 번	행정예고 내용 및 해당 조문	제 출 의 건 내 용	검 토 결 과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개정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, 기술사와 특 급기술자 간 계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및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정 건실도 평가 간소화 (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선택 가능) - (나. 업체능력 및 신용도 - 4) 재정상태 건실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방식 단일화 - 재무비율 평가로 단일화, 신용평가등급으로 단일화 의견 각각 존재 	<p><미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의 성격, 참여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 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선택권은 발주 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 - 단,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‘피평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한다’라는 내용을 개 별 PQ 공고에 명시하여 운용하는 것도 예외적으 로 가능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 합산시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 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 산하여 평가 - (가. 참여기술자 능력 - 1) 경력 - 가) 유사 엔 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로 다른 기간의 용역이 면서 중복이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산출하기 곤란 - 용역마다 중복기간을 제 외하여 일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 	<p><미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 관리에서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같이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 하는 것이 타당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유기술에 대해서는 공 동수급체 구성하더라도 지분율 적용 제외 - (나. 업체능력 및 신용 도 - 2) 보유기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수급체 보유기술에 지분율 곱한 후 합산 - 보유기술도 실적과 같이 지분율 곱한 후 합산 	<p><미반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중 일부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 전반에 활용 가능하므로 합산 평가방 식이 타당